

□ 사례명 :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절감(예누리길 조성사업)

구 분	주 요 내 용
① 사업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 치 :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-1일원(폐철도부지)</li> <li>○ 추진기간 : 2020년~2025년</li> <li>○ 사 업 비 : 5,875백만원</li> <li>○ 사 업 량 : A=28,400m<sup>2</sup>, L=1.2km</li> <li>○ 사업내용 : 문화공원조성(테마정원, 산책로, 맨발길, 족욕장 등)</li> </ul>
② 추진 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도공단 국유지 사용협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3. 2. ~ 10. : 철도공단 국유지 사용 협의</li> <li>- 24. 2. : 국유지 내 사용허가 및 행위신고 수리</li> </ul> </li> <li>○ 경상북도 도유지 사용협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2. 4. : 도유지 사용관련 협의</li> <li>- 22. 8. : 도지사 ⇄ 예천군수 양여 건의 면담</li> <li>- 22. 9. ~ 10. : 도유지 사용 관련 부서 협의</li> <li>- 22. 11. ~ 12. : 도 사업부서 재산관리관 협의</li> <li>- 23. 12. : 도유지 무상사용 관련 협의(군→도)</li> <li>- 23. 2.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</li> <li>- 23. 2. ~ 4. :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 조 동의</li> </ul> </li> </ul>
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상북도 도유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한 선례가 없었으며, 사용허가를 담당할 부서가 없었음</li> <li>○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산관리관 부서 지정, 일반재산→행정재산으로 전환, 무상 사용허가 승인의 절차를 모두 득함</li> </ul>
④ 우수사례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예누리길 조성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지 사용허가 및 도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득함</li> <li>○ 국유지 사용협의로 사유지 매입비 약2억원 절감</li> <li>○ 도유지 토지매입비 약23억원 절감</li> </ul>
⑤ 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매입 약25억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절감</li> </ul>

#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세출예산 절감 [예누리길 조성사업]

## 1. 과제 선정 배경

### □ 사업대상지

-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편입부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
- 총사업비 58억원 중 토지매입에만 39억원이(국공유지 25억원, 사유지 14억원)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※ 편입면적 : 국유지 547㎡, 도유지 18,492㎡, 군유지 2,352㎡ 사유지 7,009㎡

### □ 시설물 설치

- 공원조성을 위해 주차장,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
-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함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소유자별 현황도



현장사진 1

현장사진 2



## 2. 장애요인

### □ 사업대상지

- 경상북도 협의 당시 토지가 일반재산이었으므로 무상양여 및 대부계약 방안 검토
- 일반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한 선례 없음
- 대부계약의 경우 매년 1억 8천만원의 대부료 발생

### □ 시설물 설치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

## 3. 방안 마련 및 실행

### □ 사업대상지

- 국가철도공단(국유지) : 사용허가 요청 → 국유재산 사용허가
- 경상북도(도유지)
  - 유관부서 협의(도시재생과, 회계관리과, 도의회 등)
  - 일반재산→행정재산 전환(재산관리관 지정)
  - 공유재산 심의 → 도의회 승인 → 무상 사용허가

### □ 시설물 설치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의 예외 조항에 따른 협의 요청 →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
- ※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

(단위 : 회)

	기관방문	공문 및 자료송부	비고
노력실적	13	11(공문 및 자료송부)	

# 4. 성과(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)

-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절감(약25억원)
- 토지매입 절차 생략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
- 주민의견 반영된 명품 문화공원 조성

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인 철도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. (탄소중립 기본법 제52조제3항)

**국가철도공단**

수신 예천군수(산림복지과장)  
(경유)  
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교부(남분리 261-2 등2, 예천군)

1.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예천군 산림복지과-935(2024.01.16.)호 및 2023(2024.02.06.)호 관련합니다.

2. 귀 군에서 공유재산 「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분리 261-2 등 2필지」의 사용허가를 위한 사용료 납부 및 미영리시설물 제출하였기에 공유재산법 제30조(사용허가)에 따라 「공유재산 사용허가서」를 교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, 끝.

**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**

장관실 | 강원도 춘천시 북천로 2930 (국가철도공단) | TEL 033-250-1111 | FAX 033-250-1100

경상북도

수신 예천군수(산림복지과장)  
(경유)  
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[예천 예누리 문화공원(예천 예누리길) 조성]

1. 예천군 산림복지과-4936(2023.4.3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 군에서 사용허가 신청한 철도 공유재산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상 사용허가 하오니,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공유재산 사용·관리에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용허가기간 : 2023. 4. 17. ~ 2028. 4. 16.(5년간)  
나. 사용재산 : 폐철도부지 15필지 18,884㎡ (예천군 예천읍 남분리 135-1번지 일원)  
다. 사용목적 :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(예천 예누리길) 조성  
라. 사용료 : 무상 (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1호)  
마. 사용인 : 예천군수(산림복지과장)  
바.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: 붙임 참조

붙임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, 끝.

**경상북도지사**

주무관 정순열 | 지역균형정책팀장 민병철 | 도시재생과장 정영 2023. 4. 5.  
김종복 | 김승복

시청 도시재생과-3786 (2023. 4. 5.) | 접수 산림복지과-5063 (2023. 4. 5.)  
주소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| http://www.gb.go.kr  
전화번호 054-880-3944 | 팩스번호 054-880-3959 | jyb821@korea.kr | 비공개(5)

국유지 대부 승인

도유지 무상 사용허가

예천 예누리 문화공원(예천 예누리길)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합의서

**제1조(목적)** 본 합의는 경상북도지사와 예천군수가 경상북도 공유재산(폐철도부지)에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위치)** 예천군수는 경상북도 예천읍 남분리 135-1번지 등 15필지(18,884㎡)에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을 설치한다.

**제3조(설치규모)**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 부지(21,960㎡) 내 경상북도 공유재산 면적 18,884㎡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.

1. 대상 토지 : 폐철도부지 (총 18,884㎡ : 예천군 예천읍 남분리 260-2, 261-5, 261-4, 195-4, 135-1, 130-3, 158-3, 98-1, 306-11, 100-2, 풍북리 1038-1, 878-2, 1025-4, 761-7, 761-4)

2. 영구시설물 :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(총 18,884㎡ : 기반시설(광장,도로), 조경시설(정원), 휴양시설(정자, 교양시설)놀이대, 편의시설(휴게장,주차장), 편의시설(화장실,샤워실), 녹지)

**제4조(사용기간)**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본래 목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.

**제5조(부지의 사용)**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공유재산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 부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설물의 철거)** 제4조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경상북도에 반환한다. 단, 경상북도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은 존치한다.

**제7조(사용료)**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1호 및 「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「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」 심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

**제8조(사용허가 취소)**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위 사항을 준수하고 이의가 없음을 합의합니다.  
2023. 2. 7.

토지소유권자 **경상북도지사 이철우** (인) 토지사용권자 **예천군수 김학동** (인)

예천읍 예누리길(폐 철도 부지) 조성사업, 이르면 올 8월에 공사 착공!

군은 지난 2월(도)에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, 5월 실시계획 완료(토목조경) 오는 7월 공원 구역 확장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8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.

영구시설물 축조 승인

보도자료